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0. 6. 21(월)
문교사회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 2010. 6. 8
- 나. 제안자 : 인천광역시교육감
- 다. 회부일자 : 2010. 6. 8
- 라. 상정일자 : 2010. 6. 16(제18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
 - 제안설명 : 인천광역시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이규진
 - 검토보고 : 문교사회전문위원 유한경
 - 질의 및 토론
 -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2010. 7. 1.부터 인천광역시의회에 교육·학예에 관한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사무 지원에 필요한 지원 조직 및 직원의 정원을 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인천광역시의회 사무처 내 교육위원회 지원조직에 두는 정원을 정함.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른 인천광역시의회 사무처 정원 : 8명(13명→8명, 5명 감소) (안 제2조제1호)

-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은 당초 3,060명에서 5명 증가한 3,065명으로 함. (안 제2조제2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2010년 7월 1일부터 교육위원회가 시·도의회 상임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 2010년 6월 8일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우리위원회로 회부됨.
- 교육위원회가 금년 7월 1일부터 시의회 교육위원회로 설치·운영됨에 따라 사무지원에 필요한 정원 8명을 지원 조직으로 운영하고자 기존 교육위원회 의사국 정원을 13명에서 5명 감하고 5명을 본청 및 지역교육청 등의 정원에 증원하는 사항으로 전체적인 정원에는 변동사항이 없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사무직원 정원 구성(안) : 8명

| 구분 | 일반직(교육행정) | | | | | 별정직(속기) | | 기능직 | | | | | 계 |
|--------------|-----------|----------|----------|----------|----------|----------|----------|-------|-------|----------|----------|----------|----------|
| | 4급 | 5급 | 6급 | 7급 | 소계 | 6급상당 | 소계 | 운전 6급 | 운전 7급 | 사무 9급 | 사무 10급 | 소계 | |
| 의사국 | 2 | 1 | 4 | 1 | 8 | 1 | 1 | 1 | 1 | 1 | 1 | 4 | 13 |
| 구성(안) | 1 | 1 | 2 | 2 | 6 | 1 | 1 | - | - | 1 | 0 | 1 | 8 |
| 증감 | △1 | - | △2 | 1 | △2 | - | - | △1 | △1 | - | △1 | △3 | △5 |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1)은 교육위원회 사무에 대한 지원을 위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의회 사무처에 지원조직과 사무직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7조(교육위원회 사무에 대한 지원) ① 교육위원회 및 시·도의회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의회 사무처에 지원조직과 사무직원을 둔다

한편, 행정안전부와 교육과학기술부의 시·도교육위원회 지원조직 설계 및 정원운용 방안에 의하면, 교육전문위원과 소속 사무직원은 현행 의사국 정원을 넘지 않은 범위에서 해당 시·도와 교육청이 협의하여 적정 규모로 책정하도록 하였음.

우리시의회는 상임위원의 원활한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위원회별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등 각 3명의 입법지원 인력과 회의록 작성을 위해 각 2명의 속기직을 운용하고 있는 바, 기존 시의회 기구와 정원을 감안할 때 향후 교육위원회의 지원조직과 정원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 의 >

○ 정중섭 위원

- 의사국 정원 12명에 대해 8명은 교육위원회 정원으로 하고 잔여인력 5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 답 변 >

○ 기획관리국장 이규진

- 잔여인력에 대해서는 본청 및 지역교육청에 배치토록 할 계획임.

5. 토론요지

가. 찬성 : 김용근, 이명숙, 오홍철, 이병화, 정중섭 위원

나. 반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석위원 전원 찬성 : 5명)

7. 기타 특이사항

- 없음

붙임 :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시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3,073명으로 그 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인천광역시의회 사무처 정원 : 8명
2.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 정원 : 3,065명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운영한 교육위원회 의사국 정원은 2010년 8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2조(정원의 총수) <u>시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3,073명</u>으로 그 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다만, <u>교육위원회 의사국 정원</u>은 「<u>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 의사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u>」에 의한다.</p> <p>1. <u>교육위원회 의사국 정원</u> : 13명</p> <p>2.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 : <u>3,060명</u></p> | <p>제2조(정원의 총수) <u>시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3,073명</u>으로 그 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u>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u>」 제 <u>17조제1항에 따른 인천광역시의 회 사무처 정원</u> : 8명</p> <p>2. ----- ----- ----- : <u>3,065명</u></p> |